

해양수산부 훈령 제600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경제성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공법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하고, 시험시공 지원기술로 선정된 신기술 등의 소요비용 중 기술사용료 또는 특허료 등의 비용은 설계 반영 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업체의 적정 가격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발주청의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절차 정비(안 제8조)
- 나.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관련 서식 신설(안 제9조 제1항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 다. 발주청의 시험시공 지원기술 심의기준 정비(안 제10조)
- 라. 발주청에서 시험시공 지원기술로 선정된 신기술 등의 적정한 소요비용 반영을 위해 기술사용료 또는 특허료 등의 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11조 제3항 개정)
- 마. 시험시공 지원 검토가 지방청까지 확대(2020.10)됨에 따라 인천지방해양

수산청 및 부산항건설사무소 소속 위원회의 시험시공 선정·변경 관련 심의 기능 추가(안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정)

바. 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사전검토 절차 마련(안 제15조 제2항)

사. 신기술 활용 심의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적 타당성 강화를 위해 심의 절차 개선(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일반공법과 비교하여 공사비가 높은 공법은 심의 요청시 제외하도록 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공법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기술점수 60점 → 70점) 및 가격점수 감점기준을 축소(30점 → 20점) 하며, 위원별 평가점수의 영향력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최종점수 산정 시 위원의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 비리 등에 관한 제재기준 중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및 사전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0.5년간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1년간 해당 공법의 추천을 정지하고, 심의위원의 경우 당해 심의 배제와 함께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 기술자문위원회 자격을 2년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별지 제1호 서식)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은 감사부서 또는 운영지원과 직원 입회하에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선정방법 개선(별표 1)
- 심의 서식 중 ‘제척’ 및 ‘기피’를 ‘회피’로 법령 용어에 맞게 수정(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9.7.1. 시행)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책임기술자’를 각각 ‘책임건설사업관리술인’ 및 ‘책임기술인’으로 변경(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기술 등의 관리자가 자신의

공법에 대한 설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별표 1)

- 심의위원 공정한 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심의위원별 평가사유서를 실명으로 공개하던 것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방법 개선(별표 1)
- 업체의 적정 가격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평가자료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가격평가자료는 사업부서에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시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제출방법 개선.(별지 제1호 서식)
- 원활한 심의 추진을 위하여 신기술 활용 심의 및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심의서식 추가(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제4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서”를 “순서(별지 제2호서식)”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에 따라”를 “제8조에 따라 시험시공”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비용”을 “비용(단, 기술사용료 또는 특허료 등은 제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심의(해양수산부장관에 한한다.)”를 “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해양수산부장관에 한한다.)”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 까지의”를 “제12조까지, 제14조의”로 한다.

제17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 제15조제2항,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기술 활용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선정) ① ~ ④ (생략)</p> <p>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 위원회 자문 결과, 시험시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u>제4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u>를 받아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p> <p>제9조(지원기술 선정절차)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u>순서</u>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지원기술 심의 기준) ① 위원회가 <u>제8조제1항에 따라</u> 지원기술을 선정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제4조제4항 각 호를 준용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시험시공 설계반영) ①·② (생략)</p> <p>③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u>비용</u>은 신기술 등의 관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설계용역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이 정한다.</p> <p>④ (생략)</p> <p>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제8조(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선정)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제10조에 따른 심의</u> ----- -----.</p> <p>제9조(지원기술 선정절차) ① ----- ----- ----- <u>순서(별지 제2호서식)</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지원기술 심의 기준) ① ----- -- <u>제8조에 따라 시험시공</u> 지원기술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시험시공 설계반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비용(단, 기술 사용료 또는 특허료 등은 제외)</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1. ~ 2. (생략)</p> <p>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u>심의(해양수산부장관에 한한다.)</u></p> <p>4.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u>변경(해양수산부장관에 한한다.)</u></p> <p>5. (생략)</p> <p>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u>제12조까지</u>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운영규정 제9조 제1항 본문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를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로 한다.</p> <p>③ (생략)</p> <p>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u>2021년 1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12월 31일</u>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별표 1]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제7조 관련)</p> <p>1. 심의 절차</p> <p>④ 심의 및 공법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등 <u>가격평가(40%)</u> <p>(신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8조</u>----- ----- <u>심의</u></p> <p>4. ----- <u>변경</u></p> <p>5. (현행과 같음)</p> <p>② ----- ----- ----- <u>제12조까지,</u> <u>제14조의</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재검토기한) ----- ----- ----- - <u>2021년 7월 1일</u> ----- ----- <u>6월 30일</u> ----- -----.</p> <p>[별표 1]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제7조 관련)</p> <p>1. 심의 절차</p> <p>④ 심의 및 공법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가격평가(30점)</u> <p>⇒ <u>가격평가 자료는 심의 당일 사업부서에서 밀봉하여 제출</u></p>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등록, 청렴서약서, 제척 및 기피신청서, 위원 접촉신고서 제출 ▪ 심의 및 신기술 활용 특정공법 선정 <p>⇒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u>평가(60%)</u>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점한 신기술 등을 선정</p> <p>⑤ 심의결과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공개 <p>⇒ 공개요청이 있을 시 심의자료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회피</u> -----, ----- ▪ 심의 및 신기술 활용 특정공법 선정 <p>⇒ ----- -----<u>평가(70점)</u>----- -----</p> <p>⑤ 심의결과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공개 (삭제)
<p>2. 심의 신청전 사업부서 준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가능한 공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대상 공법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변별력이 있으며,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특허 등 우수한 공법 6개를 선정하여 <u>요청하여야 한다. 단, 신기술 등 적용 가능한 공법이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한다.</u> -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이 1개인 경우에는 일반공법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p>2. 심의 신청전 사업부서 준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가능한 공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대상 공법은 ----- ----- ----- -----<u>요청해야</u> -----<u>한다. 단, 일반공법과 비교하여 공사비가 높은 공법은 제외한다.</u> - <u>신기술 등 적용 가능한 공법이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하며,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이 1개인 경우에는 일반공법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한다.</u>
<p>4. 위원회 구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주관부서는 사업부서의 신기술 활용 심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처리 지침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p>4. 위원회 구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단, 심의위원은 5배수 이상의 후보</u>

현행	개정(안)
<p>○ 위원 및 사업부서에 제척대상 해당여부를 발송하여 제척대상에 해당될 시 <u>제척</u> 및 기피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p> <p>* <u>제척</u> 및 기피 외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상기 일수를 적용하여 업무를 진행한다.</p> <p>** 위원이 제척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u>기피</u>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2년 동안 해양수산부(부산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포함) 기술자문위원회 및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박탈한다.</p> <p>5. 심의 및 공법 선정</p> <p>○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여시 개최하고, <u>가격점수(40점)</u>와 <u>기술점수(60점)</u>로 구분하여 평가한다.</p> <p>○ 위원회 심의 순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서는 신기술 활용 신청현황 및 적용사유 등은 사업부서 또는 <u>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u> 설명하고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는 설계는 <u>책임기술자</u>, 공사는 <u>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u>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동의하에 다른 전문가 	<p><u>자를 대상으로 감사부서 또는 운영지원과 직원 입회하에 추천방식으로 선정하되,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u></p> <p>○ ----- ----- <u>회피</u> ----- -----.</p> <p>* <u>회피</u> ----- -----.</p> <p>** ----- ----- <u>회피</u>----- ----- ----- -----.</p> <p>5. 심의 및 공법 선정</p> <p>○ ----- -----, <u>가격점수(30점)</u>와 <u>기술점수(70점)</u>로 -----.</p> <p>○ 위원회 심의 순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u> ----- ----- <u>책임기술인이</u>, ----- <u>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u>----- -----,

현행	개정(안)				
<p>가 설명할 수 있다. 단, 신기술 등의 권리자는 설명할 수 없다.</p> <p>6. 평가결과 공개</p> <p>○ 심의에 참여한 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별 평가사유서 <u>실명 공개</u></p> <p>[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3항 관련)</p> <p>[제2쪽]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설명서</p> <table border="1" data-bbox="215 763 791 898"> <tr> <td data-bbox="215 763 474 898">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td> <td data-bbox="474 763 791 898"></td> </tr> </table> <p>[제3쪽] 신기술 활용 심의자료 작성방법</p> <p><input type="checkbox"/> 신기술 활용 검토의견서 작성</p> <p>○ (신설)</p> <p>○ 추천된 각 공법에는 특허 및 신기술 번호, <u>업체명, 공법개요, 특징[경제성, 시공성(현장적용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의 현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작성순은 업체명 가나다라 순으로 작성한다.)</u></p>	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p>-----.</p> <p>6. 평가결과 공개</p> <p>○ ----- ----- <u>공개</u></p> <p>[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3항 관련)</p> <p>[제2쪽]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설명서</p> <table border="1" data-bbox="820 763 1390 898"> <tr> <td data-bbox="820 763 1070 898">책임기술인 (현장대리인/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td> <td data-bbox="1070 763 1390 898"></td> </tr> </table> <p>[제3쪽] 신기술 활용 심의자료 작성방법</p> <p><input type="checkbox"/> 신기술 활용 검토의견서 작성</p> <p>○ <u>신기술 등의 소요예산가격이 일반 공법으로 시행할 때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u></p> <p>○ 추천된 각 공법에는 특허 및 신기술 번호, <u>취득일자, 보호기간, 보유권자 및 전용·통상실시권자,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지역,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한다.</u></p> <p>○ <u>공법개요, 특징[경제성, 시공성(현장적용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의 현황을 포함 작성해야 한다.(작성순은 업체명 가나다라 순으로 작성한다.)</u></p>	책임기술인 (현장대리인/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책임기술인 (현장대리인/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현행	개정(안)
<p>- <u>경제성에는 공사비와 시공실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u></p> <p>· <u>공사비에는 신기술 등에 대한 공사비와 본 공법 적용으로 인한 주변여건의 변동 공사비(추가 성토 등)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u>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해당 업체의 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p> <p>· <u>시공실적에는 최근 5년간의 실적만 비교한다.</u></p> <p>(신설)</p> <p>- 시공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p> <p>○ 색도(칼라) 사용 가능하고, 상호 비방 또는 비교하는 내용 금지하며, 분량은 최대 20페이지 이내이나 추천업</p>	<p>(삭제)</p> <p>· <u>시공실적의 기간은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으로 하며, 실적건수는 특허 등록 또는 건설 신기술 인증을 득한 이후 해당 공법이 적용된 실적으로 하며, 실적관리기관(협회 등) 및 발주청, 조달청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발주청 하도급 승인문서 등을 근거로 확인해야 한다.(시공실적 건수는 사업부서에서 확정).</u></p> <p>- 시공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p> <p>· <u>내구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품질시험성적서(최근 3년 이내 발급, 심의 요청일 기준) 등은 발급년도, 발급기관(품질시험기관) 등을 확인한 후 첨부해야 한다.</u></p> <p>○ ----- ----- -----</p>

현행	개정(안)				
<p>체 모두 동일한 내용(특징)으로 한글 및 파워포인트를 <u>작성하여야</u> 한다.</p> <p>○(신설)</p> <p>□ (신설)</p> <p>(신설)</p>	<p>-----동일한 형식(내용, 특징)으로----- -----<u>작성해야</u>-----.</p> <p>○ <u>심의자료에는 특허 및 신기술 번호·공법명·공사비 미기재(공법명은 A안, B안 등으로 기재)</u></p> <p>□ <u>가격평가자료 작성</u></p> <p>○ <u>공사비(소요예산가격, 천원단위로 표기)는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초로 추가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을 사업부서에서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시 주관부서에 밀봉하여 제출한다.</u></p> <p>○ <u>신기술 등의 업체로부터 가격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작성양식, 작성기준,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방법 등을 안내하고, 업체의 제안가격에 대한 상호 검증을 통해 향후 선정된 신기술 등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과소·과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 가격평가자료 검증 방법 및 내용 ></u></p> <table border="1" data-bbox="820 1715 1394 1989"> <thead> <tr> <th data-bbox="820 1715 895 1749">구분</th> <th data-bbox="895 1715 1394 1749">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20 1749 895 1989">설계사</td> <td data-bbox="895 1749 1394 1989"> ① 참여 공법에 대한 사전검토(도면, 공법 내용,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민원성, 계약 관련 문제발생 여부, 사후평가 결과 등) ② 참여 공법에 대한 제안가격 산출 적용시점, 설계기준, 단가산출방법(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용) 등 세부 작성기준 사전 공지 및 제출된 제안가격(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 -견적단가로 제출된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설계사	① 참여 공법에 대한 사전검토(도면, 공법 내용,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민원성, 계약 관련 문제발생 여부, 사후평가 결과 등) ② 참여 공법에 대한 제안가격 산출 적용시점, 설계기준, 단가산출방법(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용) 등 세부 작성기준 사전 공지 및 제출된 제안가격(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 -견적단가로 제출된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구분	주요 내용				
설계사	① 참여 공법에 대한 사전검토(도면, 공법 내용,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민원성, 계약 관련 문제발생 여부, 사후평가 결과 등) ② 참여 공법에 대한 제안가격 산출 적용시점, 설계기준, 단가산출방법(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용) 등 세부 작성기준 사전 공지 및 제출된 제안가격(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 -견적단가로 제출된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신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td> <td>표준품셈 등 적용불가 적정성 검증 ③도면, 구조계산, 특히 및 신기술, 설계기준 등에 부합되는 물량 적정성 검증 후 적용구간 수량 확정 ④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공법 업체와 상호 확인 후 확인서 날인 및 사업부서에 제출 ⑤소요예산가격 산출에 필요한 추가비용 등 변동 공사비 산출</td> </tr> <tr> <td>업체</td> <td>①작성기준 공지에 따라 가격 견적서 작성 제출 ②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설계사와 상호 확인 후 확인서 날인</td> </tr> <tr> <td>사업부서</td> <td>①업체 제안가격 및 추가공사비 등 소요예산가격 확정 -제안가격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적용 여부, 물량 산출 적정성 등 확인 ②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작성 및 심의 당일 주관부서에 제출</td> </tr> </table> <p style="margin-top: 20px;"><input type="checkbox"/> 관련 양식</p> <p style="margin-left: 20px;">○ 가격평가자료(사업부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6">□ 공사명 : 00항 000 건설공사</td> </tr> <tr> <td colspan="6">□ 건 명 : 0000</td> </tr> <tr> <th style="width: 15%;">비교공법</th> <th style="width: 10%;">A안/ 00공법</th> <th style="width: 10%;">B안/ 00공법</th> <th style="width: 10%;">C안/ 00공법</th> <th style="width: 10%;">D안/ 00공법</th> <th style="width: 10%;">E안/ 00공법</th> </tr> <tr> <td>제안가격(업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변동가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요예산가격</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 담당자 : (인) 담당 : (인) 부서장 : (인) </td> </tr> <tr> <td colspan="6" style="font-size: small; padding-top: 10px;"> * 변동가격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 이외에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비용 등을 산출한 금액(개, m, 경간 등 단위수량 기준) * 가격평가자료는 순공사비로 동일조건으로 천원단위까지 작성하고(단위수량 기준), 부서장까지 서명 후 심의 요청서 제출 시 별도 파일로 제출 </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20px;">○ 가격견적서 양식(업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신기술 활용 심의 가격견적서(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11">□ 공사명 : 00항 000 건설공사</td> </tr> <tr> <td colspan="11">□ 건 명 : 0000</td> </tr> <tr> <td colspan="11">□ 공법명(특허 또는 신기술 번호) :</td> </tr> <tr> <th rowspan="2" style="width: 5%;">공종명</th> <th rowspan="2" style="width: 5%;">규격</th> <th rowspan="2" style="width: 5%;">수량</th> <th rowspan="2" style="width: 5%;">단위</th> <th colspan="2" style="width: 10%;">합계</th> <th colspan="2" style="width: 10%;">재료비</th> <th colspan="2" style="width: 10%;">노무비</th> <th colspan="2" style="width: 10%;">경비</th> <th rowspan="2" style="width: 5%;">비고</th> </tr> <tr> <th>단가</th> <th>금액</th> <th>단가</th> <th>금액</th> <th>단가</th> <th>금액</th> <th>단가</th> <th>금액</th>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 <td colspan="11"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 년 월 일 회사명 : </td> </tr> </tbody> </table>		표준품셈 등 적용불가 적정성 검증 ③도면, 구조계산, 특히 및 신기술, 설계기준 등에 부합되는 물량 적정성 검증 후 적용구간 수량 확정 ④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공법 업체와 상호 확인 후 확인서 날인 및 사업부서에 제출 ⑤소요예산가격 산출에 필요한 추가비용 등 변동 공사비 산출	업체	①작성기준 공지에 따라 가격 견적서 작성 제출 ②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설계사와 상호 확인 후 확인서 날인	사업부서	①업체 제안가격 및 추가공사비 등 소요예산가격 확정 -제안가격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적용 여부, 물량 산출 적정성 등 확인 ②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작성 및 심의 당일 주관부서에 제출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 공사명 : 00항 000 건설공사						□ 건 명 : 0000						비교공법	A안/ 00공법	B안/ 00공법	C안/ 00공법	D안/ 00공법	E안/ 00공법	제안가격(업체)						변동가격						소요예산가격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담당자 : (인) 담당 : (인) 부서장 : (인)						* 변동가격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 이외에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비용 등을 산출한 금액(개, m, 경간 등 단위수량 기준) * 가격평가자료는 순공사비로 동일조건으로 천원단위까지 작성하고(단위수량 기준), 부서장까지 서명 후 심의 요청서 제출 시 별도 파일로 제출						신기술 활용 심의 가격견적서(예시)											□ 공사명 : 00항 000 건설공사											□ 건 명 : 0000											□ 공법명(특허 또는 신기술 번호) :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년 월 일 회사명 :										
	표준품셈 등 적용불가 적정성 검증 ③도면, 구조계산, 특히 및 신기술, 설계기준 등에 부합되는 물량 적정성 검증 후 적용구간 수량 확정 ④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공법 업체와 상호 확인 후 확인서 날인 및 사업부서에 제출 ⑤소요예산가격 산출에 필요한 추가비용 등 변동 공사비 산출																																																																																																																																																																																																																																																																																																				
업체	①작성기준 공지에 따라 가격 견적서 작성 제출 ②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설계사와 상호 확인 후 확인서 날인																																																																																																																																																																																																																																																																																																				
사업부서	①업체 제안가격 및 추가공사비 등 소요예산가격 확정 -제안가격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적용 여부, 물량 산출 적정성 등 확인 ②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작성 및 심의 당일 주관부서에 제출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 공사명 : 00항 000 건설공사																																																																																																																																																																																																																																																																																																					
□ 건 명 : 0000																																																																																																																																																																																																																																																																																																					
비교공법	A안/ 00공법	B안/ 00공법	C안/ 00공법	D안/ 00공법	E안/ 00공법																																																																																																																																																																																																																																																																																																
제안가격(업체)																																																																																																																																																																																																																																																																																																					
변동가격																																																																																																																																																																																																																																																																																																					
소요예산가격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담당자 : (인) 담당 : (인) 부서장 : (인)																																																																																																																																																																																																																																																																																																					
* 변동가격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 이외에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비용 등을 산출한 금액(개, m, 경간 등 단위수량 기준) * 가격평가자료는 순공사비로 동일조건으로 천원단위까지 작성하고(단위수량 기준), 부서장까지 서명 후 심의 요청서 제출 시 별도 파일로 제출																																																																																																																																																																																																																																																																																																					
신기술 활용 심의 가격견적서(예시)																																																																																																																																																																																																																																																																																																					
□ 공사명 : 00항 000 건설공사																																																																																																																																																																																																																																																																																																					
□ 건 명 : 0000																																																																																																																																																																																																																																																																																																					
□ 공법명(특허 또는 신기술 번호) :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년 월 일 회사명 :																																																																																																																																																																																																																																																																																																					

현행	개정(안)						
<p>[제4쪽] 심의위원 <u>기피</u> 신청서(위원용)</p> <p>본인은 상기 안전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u>기피</u>를 신청합니다.</p> <p>[표의 본문]</p> <p><u>기피사유</u></p> <p>[제5쪽] 심의위원 <u>제척</u> 신청(업체용)</p> <p><input type="checkbox"/> <u>제척 대상자</u></p> <p>상기 위원에 대하여 본 안전 심의의 <u>기피 및 제척</u>을 신청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인)</p> <p>* 비교란에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신기술품셈 포함), 견적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p> </div> <p>○ <u>확인서 양식(업체)</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수량 및 단가 검증 확인서(예시)</p> <p><input type="checkbox"/> 건 명 : 0000 <input type="checkbox"/> 공법명(신기술 또는 특허 번호) :</p> <p>000항 000건설공사의 0000 안전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심의를 위하여 000 엔지니어링과 000회사는 상기 공법의 수량 및 단가에 대한 상호 검증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1.신기술 등 활용 심의를 위한 도면 및 구조계산, 시방기준에 따라 수량 및 단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p> <p>2.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신기술품셈 포함) 등의 적용이 가능한 공종은 모두 적용하였으며, 부득이 적용이 곤란한 공종에 한하여 견적가를 적용하였음.</p> <p>3.상기 기준을 준수하여 수량 및 단가는 공정하게 산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설계사</td> <td style="width: 50%;">신기술 등 업체</td> </tr> <tr> <td>○ 엔지니어링</td> <td>00사</td> </tr> <tr> <td>대표이사 (인)</td> <td>대표이사 (인)</td> </tr> </table> </div> <p>[제4쪽] 심의위원 <u>회피</u> 신청서(위원용)</p> <p>-----</p> <p>-----</p> <p>-----</p> <p>-----</p> <p>-----</p> <p>-----</p> <p>-----</p> <p>-----</p> <p><u>회피</u>를 -----.</p> <p>[표의 본문]</p> <p><u>회피사유</u></p> <p>[제5쪽] 심의위원 <u>기피</u> 신청(업체용)</p> <p><input type="checkbox"/> <u>기피 대상자</u></p> <p>-----</p> <p><u>기피</u>를 -----.</p>	설계사	신기술 등 업체	○ 엔지니어링	00사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설계사	신기술 등 업체						
○ 엔지니어링	00사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현행	개정(안)																																								
<p>위원 : (인)</p> <p>[제6쪽]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p> <p>표의 상단</p> <p><u>접촉자</u></p> <p>(신설)</p> <p>[제7쪽]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p>	<p>회사명 :</p> <p>대표자 : (인)</p> <p>[제6쪽]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p> <p>표의 상단</p> <p><u>면담자</u></p> <p>[제7쪽]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업체용)</p> <p>[제8쪽]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p>																																								
<p>□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 반 내 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재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시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0.5년</td> <td>·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심의일 기준</td> </tr> <tr> <td>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td> <td>· 해당 공법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td> </tr> <tr> <td>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td> <td>· 해당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술자문 위원 자격 2년 정지 · 결정일 기준</td> </tr> <tr> <td>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 직원(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3년</td> <td>·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td> </tr> <tr> <td>5. 상기 내용 외 그 밖의 법령 및 해당수산부 자문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법령 및 기준의 내용 준용</td> <td></td> </tr> </tbody> </table>	위 반 내 용	제재기준	비 고	1.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시도	0.5년	·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심의일 기준	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1년	· 해당 공법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	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년	· 해당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술자문 위원 자격 2년 정지 · 결정일 기준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 직원(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년	·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	5. 상기 내용 외 그 밖의 법령 및 해당수산부 자문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령 및 기준의 내용 준용		<p>□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 반 내 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재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업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td> <td>· 당해 심의 배제 및 향후 공법 추천 정지 · 해당 심의일 기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심의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당해 심의 배제 · 해당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술자문위원 자격 2년 정지 · 해당 심의일 기준</td> </tr> <tr> <td>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td> <td>· 해당 공법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td> </tr> <tr> <td>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td> <td>· 당해 심의 배제 · 해당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술자문위원 자격 2년 정지 · 결정일 기준</td> </tr> <tr> <td>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당시 업체 소속 직원(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3년</td> <td>·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td> </tr> <tr> <td>5. 상기 내용 외 그 밖의 법령 및 해당수산부 자문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법령 및 기준의 내용 준용</td> <td></td> </tr> </tbody> </table>	위 반 내 용	제재기준	비 고	1.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업체	1년	· 당해 심의 배제 및 향후 공법 추천 정지 · 해당 심의일 기준	심의위원	-	· 당해 심의 배제 · 해당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술자문위원 자격 2년 정지 · 해당 심의일 기준	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1년	· 해당 공법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	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년	· 당해 심의 배제 · 해당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술자문위원 자격 2년 정지 · 결정일 기준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당시 업체 소속 직원(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년	·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	5. 상기 내용 외 그 밖의 법령 및 해당수산부 자문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령 및 기준의 내용 준용	
위 반 내 용	제재기준	비 고																																							
1.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시도	0.5년	·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심의일 기준																																							
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1년	· 해당 공법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																																							
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년	· 해당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술자문 위원 자격 2년 정지 · 결정일 기준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 직원(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년	·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																																							
5. 상기 내용 외 그 밖의 법령 및 해당수산부 자문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령 및 기준의 내용 준용																																								
위 반 내 용	제재기준	비 고																																							
1.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업체	1년	· 당해 심의 배제 및 향후 공법 추천 정지 · 해당 심의일 기준																																						
	심의위원	-	· 당해 심의 배제 · 해당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술자문위원 자격 2년 정지 · 해당 심의일 기준																																						
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1년	· 해당 공법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																																							
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년	· 당해 심의 배제 · 해당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술자문위원 자격 2년 정지 · 결정일 기준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당시 업체 소속 직원(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년	·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정일 기준																																							
5. 상기 내용 외 그 밖의 법령 및 해당수산부 자문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령 및 기준의 내용 준용																																								
<p>□ 제재방법 및 제재기준 관리</p> <p>1.~2.(생략)</p> <p>3. 제재 취소</p> <p>가.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p>	<p>□ 제재방법 및 제재기준 관리</p> <p>1.~2.(생략)</p> <p>3. 제재 취소</p> <p>가. -----</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단, 동일 위원의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50%이내에서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 50%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u>변경하여야</u> 한다.</p>	<p>----- ----- ----- ----- ----- <u>변경해야</u>-----.</p>
<p>나. (생략)</p>	<p>나. (생략)</p>
<p>[제8쪽]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p>	<p>[제9쪽] (현행 제8쪽과 같음)</p>
<p>(신설)</p>	<p>[제10쪽] <u>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 심의 결과표</u></p>
<p>(신설)</p>	<p>[제11쪽] <u>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에 대한 심의의견서</u></p>
<p>[제9쪽]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 사유서</p>	<p>[제12쪽] (현행 제9쪽과 같음)</p>
<p>[제10쪽] 신기술 <u>활용 적용</u>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p>	<p>[제13쪽] 신기술 <u>활용</u>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p>
<p>[제11쪽] 신기술 활용 가격평가표(예시) - 심의부서용</p>	<p>[제14쪽] 신기술 활용 가격평가표(예시) - 심의부서용</p>
<p>- 소요예산 가격이 균형가격(EP) 이하는 <u>40점</u></p>	<p>- 소요예산 가격이 균형가격(EP) 이하는 <u>30점</u></p>
<p>* 평점 = <u>40점</u> [소요예산가격 ≤ 균형가격]</p>	<p>* 평점 = <u>30점</u> [소요예산가격 ≤ 균형가격]</p>
<p>- 균형가격(EP)을 기준으로 소요예산 가격이 증가시 감점(소수점 3째자리에서 절사)</p>	<p>- 균형가격(EP)을 기준으로 소요예산 가격이 증가시 감점(소수점 3째자리에서 절사)</p>
<p>* 평점 = <u>40점 - 감점</u></p>	<p>* 평점 = <u>30점 - 감점</u></p>
<p>*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 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p>	<p>*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 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p>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균형가격 이상 비율</th> <th>감점</th> </tr> <tr> <td>5%까지</td> <td>5점</td> </tr> <tr> <td>20%이상</td> <td>30점</td> </tr> </table> <p>[제12쪽]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표(예시) - 심의위원용</p> <p>[제13쪽]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 집계표(예시) - 심의부서용</p> <p>하단 점수산정방법 (신 설)</p> <p>* 위원별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의 순위에 따라 5점씩 강제 차등(1등 60점, 2등 55점, 3등 50점, 4등 45점, 5등 40점, 6등 35점)하되, 2개 이상의 공법 평가점수 합계가 동점일 경우 각 동점자는 해당 순위의 점수를 부여한다.</p> <p>[제14쪽] 신기술 활용 선정 종합 집계표(예시) - 심의부서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r> <tr> <td>신기술 등 적용 공종명</td> </tr> </table> <p>(신설)</p>	균형가격 이상 비율	감점	5%까지	5점	20%이상	30점	구분	신기술 등 적용 공종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균형가격 이상 비율</th> <th>감점</th> </tr> <tr> <td>0% ~ 20%까지</td> <td>0점 ~ 20점</td> </tr> <tr> <td>20%초과</td> <td>20점</td> </tr> </table> <p>[제15쪽]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표(예시) - 심의위원용</p> <p>[제16쪽]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 <u>점수</u> 집계표(예시) - 심의부서용</p> <p>하단 점수산정방법</p> <p>* <u>평가항목별 최종점수는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다만, 심의위원 7인 이상이 의결에 참여할 경우에 적용한다.</u></p> <p>* ----- ----- (1등 70점, 2등 65점, 3등 60점, 4등 55점, 5등 50점, 6등 45점) ----- ----- -----</p> <p>[제17쪽] 신기술 활용 선정 종합 집계표(예시) - 심의부서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신기술 등 적용 공종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격점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술점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계</td> </tr> </table> <p>[별지 제2호 서식]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관련)</p> <p>[제1쪽] 신기술 등 시험시공 제외 사유서</p>	균형가격 이상 비율	감점	0% ~ 20%까지	0점 ~ 20점	20%초과	20점	구분		신기술 등 적용 공종명	가격점수	기술점수	합계
균형가격 이상 비율	감점																				
5%까지	5점																				
20%이상	30점																				
구분																					
신기술 등 적용 공종명																					
균형가격 이상 비율	감점																				
0% ~ 20%까지	0점 ~ 20점																				
20%초과	20점																				
구분																					
신기술 등 적용 공종명	가격점수																				
	기술점수																				
	합계																				

현행	개정(안)
<p>[별지 제2호 서식]</p>	<p>[제2쪽] <u>신기술 등 시험시공 제외 사유서 집계표</u></p> <p>[제3쪽] <u>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예비후보) 선정심의 위원별 평가표</u></p> <p>[제4쪽] <u>예비후보 선정 항목별 평가지표</u></p> <p>[제5쪽] <u>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예비후보) 선정심의 위원별 평가 집계표</u></p> <p>[제6쪽] <u>0000년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최종선정 심의의견서</u></p> <p>[제7쪽] <u>0000년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최종선정 심의 집계표</u></p> <p>[제8쪽] <u>0000년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최종선정 심의 의결서</u></p> <p>[제9쪽] <u>심의 의결서</u></p> <p>[제10쪽] <u>위원별 심의결과 집계표</u></p> <p>[별지 제3호 서식] (현행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음)</p>